

3 재정운용계획

3-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3,519	31,879	32,544	33,264	34,092	165,297	0.40%
자 체 수 입	9,616	9,620	9,758	10,063	11,061	50,118	3.60%
이 전 수 입	20,195	20,423	20,697	20,734	20,172	102,220	0.00%
지 방 채 등	2,500	100	100	200	200	3,100	△46.8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07	1,737	1,989	2,267	2,659	9,859	21.80%
세 출	33,519	31,879	32,544	33,264	34,092	165,297	0.40%
정 책 사 업	29,554	27,992	28,735	29,348	31,843	147,470	1.90%
경 상 지 출	3,965	3,887	3,809	3,916	2,249	17,827	△13.20%

▶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 - 1] × 100

③-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2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94	50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0	279
성별영향평가사업	24	2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0	200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 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③-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주민 주도적 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 참여적 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5년 전주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0	17.4	70	17.4	-	-	-	-	-	-

❖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액			1,74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화정책과	동서학동 862-14 삼거리 방범용 CCTV 설치	1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화정책과	인후3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화정책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숨말마을 농배수로 설치 및 정비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원동마을 농수로 정비 및 우수받이(맨홀) 설치사업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공원과	진북어린이공원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 설치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버스정책과	중앙동 버스승강장 내 환경개선사업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버스정책과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	3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버스정책과	버스승강장 냉온열 의자 설치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버스정책과	송천1동 관내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	6.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안전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	4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관정책과	상상나무 작은도서관 '어린이 영어 도서존' 구축	17.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공원녹지과	공북1길 쌈지공원 내 노후운동기구 교체	8.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공원녹지과	완산동 공원 환경정비사업	3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공원녹지과	중화산1동 공원 환경개선사업	3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공원녹지과	중화산1동 일원 수목 정비사업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공원녹지과	인정길공원 환경개선사업	50.0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공원녹지과	장승배기로 도로변 상록수 식재	5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공원녹지과	공원 LED 등 교체 설치	32.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공원녹지과	황방산(서곡교회 뒤) 등산로 정비사업	5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축과	은석마을 골목안길(은석길 37-1 앞) 확장공사	17.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축과	원색장마을 운동기구 교체 및 보수	6.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축과	석산마을 안길 포장 공사	8.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축과	망월마을 도로 포장 공사	9.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전주초 인근 주택가 골목길 재포장공사	32.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오목교 보행길 재포장	2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노송동 천사꽃길 인도보수 사업	3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중노송동 골목길 도로포장 사업	11.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서노송동 골목길 난간 설치 사업	2.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완산5길 34 골목길 안전난간 설치	1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완산2길 안전난간 설치 및 교체	1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동서학동 848-62 나무계단 및 난간 보수	12.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서서학동 소도로(곤지산4길 12-43) 포장	1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서서학동 주민센터 앞 인도 정비	4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꽃밭정1길 골목길 도로포장	5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서신동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	18.0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안행 2길 경사로 열선 설치	5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거마남로 인도블럭 정비	5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삼천 용리로 인도정비 공사	33.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효정경로당 주변 급경사 도로 열선 설치	5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오두정 1길 도로 열선 설치	5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강변로 210 일대 노후 인도 재포장 공사(2차)	5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인후2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공사	1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덕진 청소위생과	원성덕마을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15.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덕진 청소위생과	부동마을 입구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	6.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덕진 공원녹지과	숲정이어린이공원 탄성 포장재 교체(고무칩 포장)	3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덕진 공원녹지과	북일길 어린이공원 내 바닥 정비	15.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덕진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내 벤치 설치 및 교체	4.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덕진 공원녹지과	송천 제 2 호 어린이공원 정비	5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덕진 공원녹지과	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	4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축과	왜망실 아하마을 모정 보수 사업	15.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축과	농촌마을(왜망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사업	15.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축과	화개마을 운동기구 설치	12.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도로결빙방지 안티아이싱 설비	50.0	
주민주도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도로 결빙 방지 안티아이싱	40.0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정언신로 인도정비사업	18.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사평로 인도재정비공사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삼송2길 도로재포장	3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금암5길 도로결빙방지안티아이싱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거북마우로 인도정비공사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야전마을 인근 도로확포장공사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인교로 인도정비사업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인덕원로 진출입 경사도로 안티아이싱포장사업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오송로 인도투수콘정비사업	28.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송천1동 관내 블라드 교체사업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송천1동 관내 햇빛가림막(그늘막) 설치	6.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청북마을 가드레일 설치사업	1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여의영무예다음 아파트 진입로 아스콘포장	17.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쪽구름4길(소로1-84호선) 부근 평탄작업 및 잡석설치	1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지상변압기 환경정비사업	10.0	

③ - 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25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170	326	330	24,907	23,890	1,018
광역도시기반조성실	1	8	15	12	592	465	127
감사담당관	1	1	2	1	2	2	1
공보담당관	1	1	1	1	12	12	0
홍보담당관	1	1	3	2	16	15	1
국제협력담당관	1	2	5	4	7	10	△3
기획조정실	1	17	34	41	3,026	2,768	258
경제산업국	1	11	15	24	839	1,037	△197
복지환경국	1	17	34	38	10,671	9,838	832
문화체육관광국	1	15	29	22	1,678	1,626	51
건설안전국	1	9	17	19	972	1,074	△102
자원순환녹지국	1	6	11	13	1,843	1,466	378
대중교통국	1	10	20	14	1,472	1,754	△282
전주시보건소	1	7	17	19	388	325	64
농업기술센터	1	6	16	25	728	756	△28
도서관본부	1	4	13	13	79	131	△52
기타사업소	1	7	12	13	225	249	△24
의회사무국	1	1	3	2	80	78	2
완산구청	1	24	40	34	1,139	1,161	△22
완산구 동	0	0	0	0	12	13	△2
덕진구청	1	23	39	33	1,117	1,098	18
덕진구 동	0	0	0	0	10	11	△1

③ -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21.96	45.87	44.87	21.01	64.94	36.74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인건비 : 보수(101-01), 기타직 보수(101-02),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우리시는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36.7%입니다.

③ - 6 국외여비 편성현황

☐ 2025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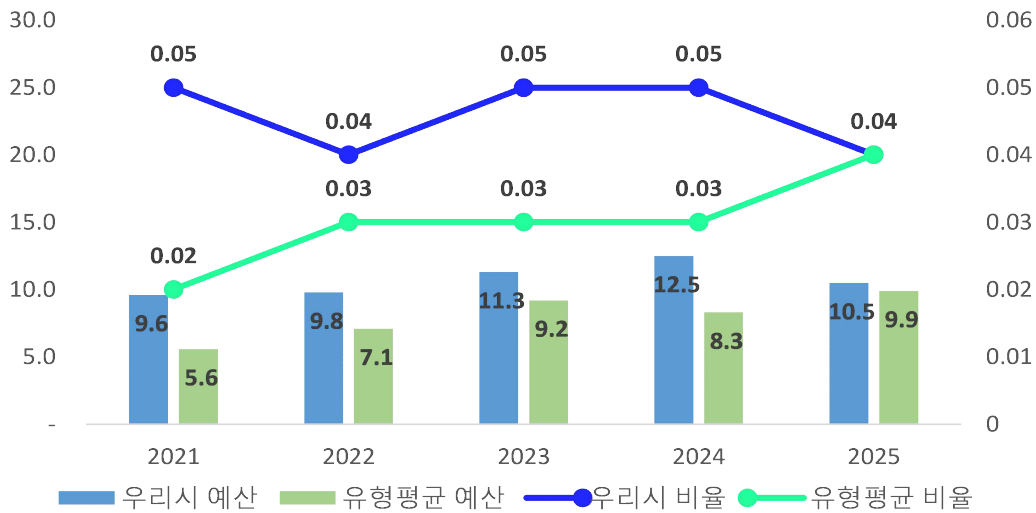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27,042	10.5	1.9	8.6	0.04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최근 5년 국외여비 규모 및 비율 현황

(단위: 억원, %)



우리시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지속 상승추세이며,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은편입니다. 다만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국외업무여비 예산 비율은 유형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③ -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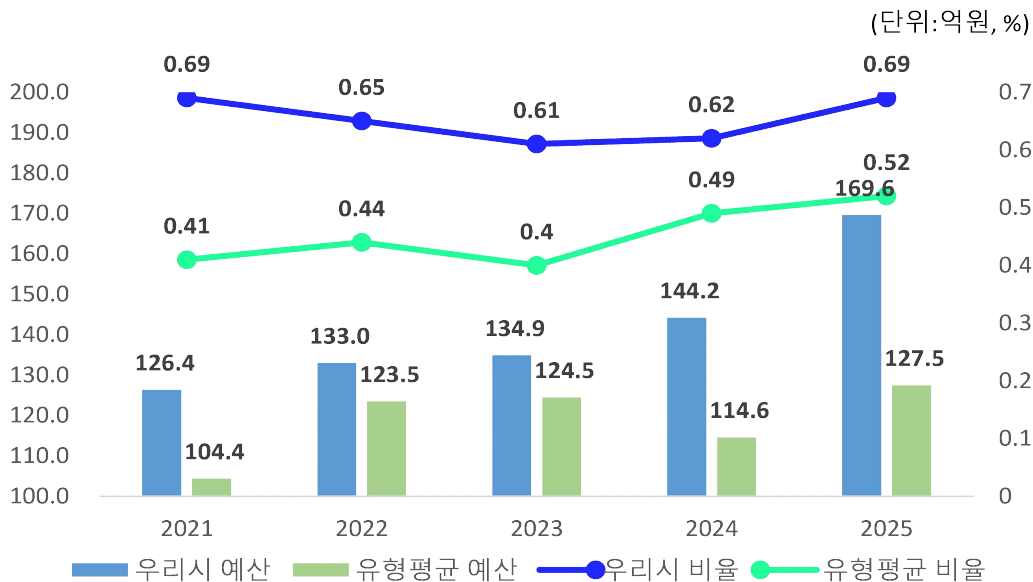
☐ 다음은 우리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448,858	16,961	0.69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 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최근 5년 행사축제경비 규모 및 비율 현황



우리시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코로나 이후 지역행사 증가로 인해 지속 상승추세이며, 2025년 기준으로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액비율은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높은수준입니다.

③-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시의 2025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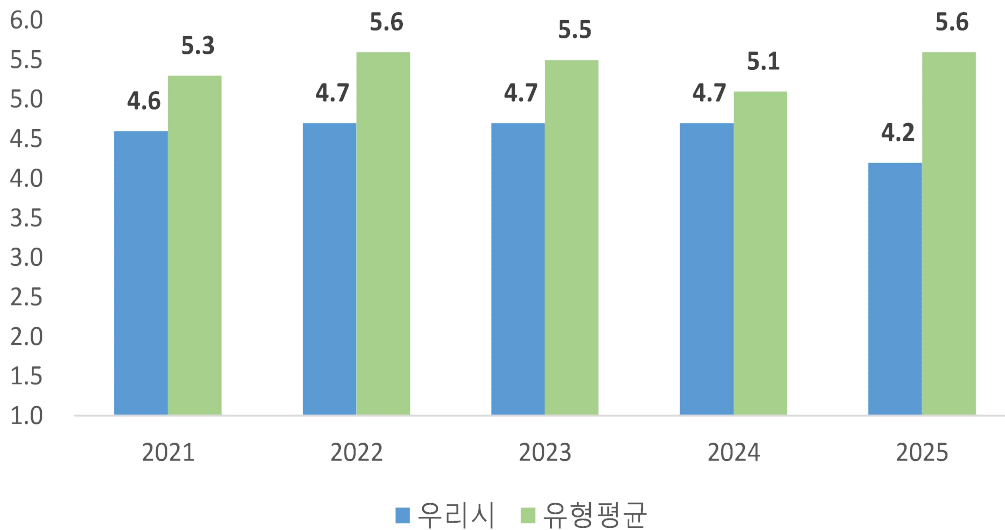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8.7	4.2	0.7	0.5	3	48.71%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 총액한도 이상 편성시, 과편성 사유 입력.

최근 5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위:억원)



우리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최근 4년간 비슷한 추세이며, 유형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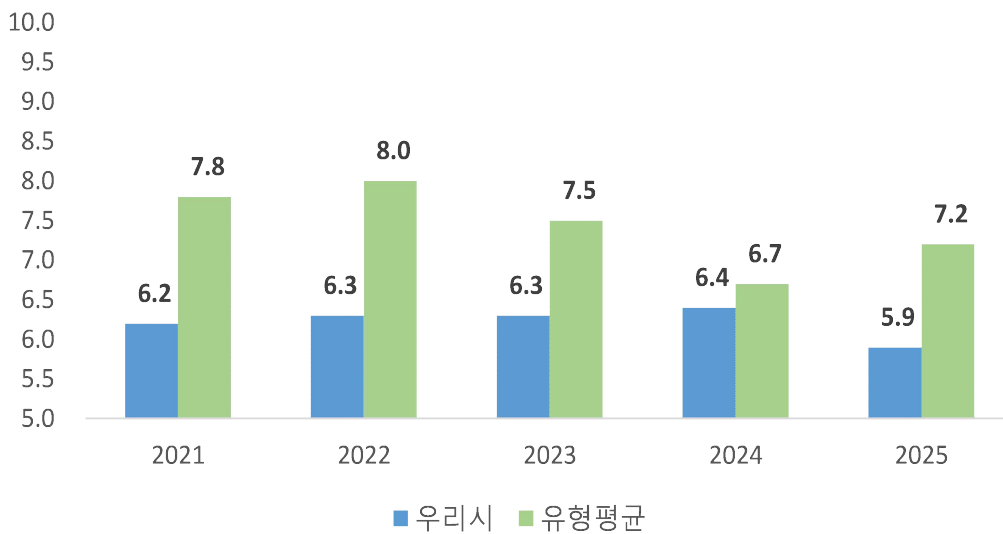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6.5	5.9	90.13

※ 총액한도 이상 편성시, 과편성 사유 입력.

최근 5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단위:억원)



우리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최근 감소 추세이며, 유형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③-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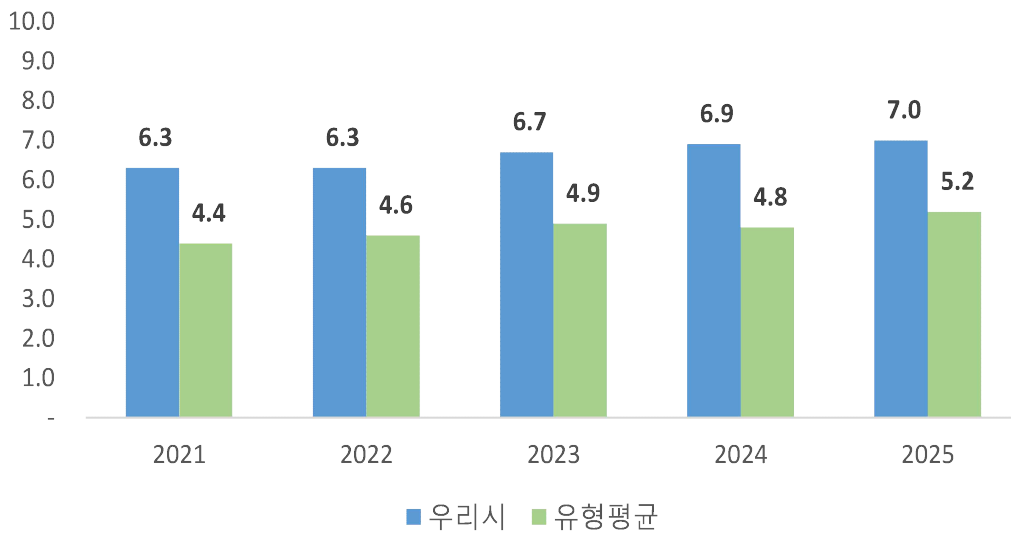
☐ 우리 전주시의 2025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7.4	7	2.9	1.9	2	0.3	95

최근 5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단위:억원)



우리시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상승추세이고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높은수준이며 총액 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③ -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시의 2025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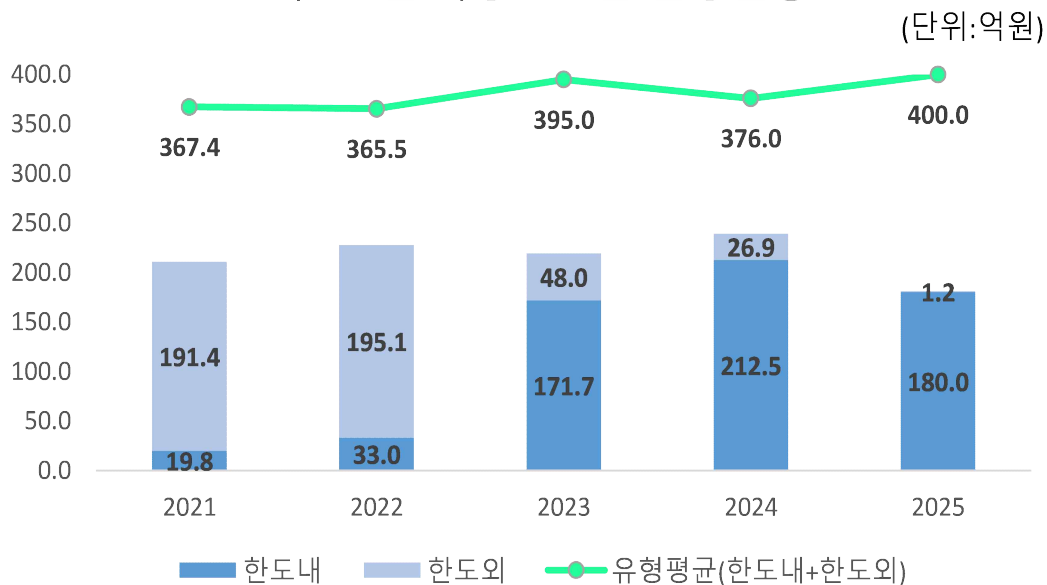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총액한도(A)	예산편성액			총액한도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액한도 대상 편성액(B)	총액한도 대상 제외 편성액(C)*	
345	181.2	180.0	1.2	52.15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은 총액한도 대상 제외

최근 5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시의 지방보조금은 최근 4년간 비슷한 추세이며,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 대비 적은 수준입니다.

③ -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 우리시의 2025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24,907	107	0.43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③-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706	4,450,184	1,201
공무원 일·숙직비	2,420	145,2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29	8,159,360	6,139

* 해당 예산액은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관련 예산을 포함

※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수 있음

<각 항목별 기준액>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1인당 1,472,900원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당 60,000원
- 통장활동 보상금 : 1인당 400,000원

③ -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 우리시의 2025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일반예비비 비율 (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비율 (C/A)
24,489	75	0.3	0	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